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19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 박광온 · 정필모 · 김승원

김진표・오영훈・송갑석

최인호 · 임호선 · 이탄희

김영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등을 갖추고 시·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시설의 확보를 보다 체계화·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아이돌봄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 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 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라목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1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6호라목 중 "공공·문화체육시설"을 "공공·문화체육시설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의2. (생 략)	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6. "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	6
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시설을 말한다.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학교・운동장・공공청사	라
·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	
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	
<u>공공·문화체육시설</u>	<u>공</u> 공・문화체육시설(「아
	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
	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
	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
	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
	<u>포함한다)</u>
마. ~ 사. (생 략)	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
7. ~ 20. (생 략)	7. ~ 20. (현행과 같음)